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1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·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·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 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·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
- 발의자 : 이영빈 의원 외 5인
- 발의일자 : 2020. 5. 22.
- 회부일자 : 2020. 5. 28.
- 검토기간 : 2020. 5. 29. ~ 2020. 6. 5.

2. 제정이유

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3조)
- 다. 지원의 범위(안 제4조)
- 라. 지원방법(안 제5조)
- 마. 지원신청(안 제6조)

4. 관계 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가 남긴 채무에 대해 채무 면제(債務 免除)의 취지로 상속의 포기(또는 한정승인)을 원하는 관내 아동·청소년들(안 제3조)에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(안 제4조)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련된 제도적 틀 마련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‘상담 및 자문료’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5조)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- 현재 우리사회에는 일반인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(또는 소송 의뢰)을 함에 있어 수임료 부담 등 일정부분 현실적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임. 이러한 현실에서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 부모 잃은 아동·청소년에게 ‘무료 법률상담’ 등, 일정 수준의 법률적 지원책(안 제2조)을 구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동 조례 제정(취지)에 대해서는 이견(異見)이 없음.
- 다만, 보다 실효성(實效性)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1. 안 제5조제2항 “상담 및 자문료” 범위에 대해

- 본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 부모 잃은 아동·청소년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(구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) 변호사에게서 (소송대리¹⁾ 등) 일정 수준의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.
- 대신, 구에서는 이들 변호사에게 ‘상담 및 자문료’ 수준의 반대급부는 지급하도록 규정(안 제5조제2항). 그러나 변호사가 (단순 상담·자문에 그치지 않고)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법률적 지원을 수행해야 할 경우, 발생할 최소한의 추가 비용(예: 인지대·송달료 등)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됨.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 “상담 및 자문료” 범위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(자구 수정 포함)도 필요하다고 사료됨.

1)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(소송대리인의 자격)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2. 현행 달서구 여타 조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

- 현재 달서구청은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구청장 위촉을 받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법률·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²⁾를 제정·시행 중에 있음.
 - 또한, 현재 달서구는 ‘북한이탈주민’·‘외국인 주민’들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(또는 자문)을 제공하도록 개별 조례³⁾도 운영하고 있음.
- 그러나 상기 현행 달서구 조례들에는 구민들이 (구청장의 위촉을 받은)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상담 (자문)을 받을 수 있으나, 조례안과 같이 (상담·자문에 그치지 않고)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의 추가적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없음.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결과적으로 개별 조례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 내용(혜택)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오해 (또는 불신)를 불러 올 개연성이 있음.
- 결국,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법률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입법 방향으로 사료되나, 한편으로 전술(前述)한 구민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, 본 조례안 시행에 앞서, 본 조례안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달서구 여타 조례들에 대한 사전 정비 여부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차원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2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3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

- 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